

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검토경과

- 발 의 자 : 박갑상 · 김성태 · 김대현 · 강성환 · 서호영 · 이시복 · 정천락 의원
- 회부일자 : 2019년 2월 1일

2. 제안이유

-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더불어 도시재생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,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으로서 조례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·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도시재생의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보다 충실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·분석·평가 지원 및 조사연구·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추가 규정함
(안 제8조제6호)
- 나. 도시재생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생사업의 모니터링·평가 등(활성화 계획 평가)에 관한 사항을 명확·체계화함(안 제10조)
- 다. 주민의 도시재생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과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(안 제13조의2)
- 라.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의 취소와 지원금 환수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함(안 제14조)
- 마. 도시재생사업으로 형성된 행정재산 관리에 대한 사무위임 사항을 규정함(안 제20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 대비표 : 조례안 참조
- 나. 관계법령 :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5. 검토의견

- 주요 내용으로
 - 안 제8조제6호에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강조함.
 - 안 제10조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함.
 -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주민역량강화 사업의 시행과 사업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.

- 안 제14조에 지원결정 취소와 지원금액 환수에 관한 규정을 관련법 및 조례에 따르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.
- 안 제20조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형성된 행정재산 관리에 대한 사무위임 사항을 신설하여 행정재산의 운영 및 관리를 내실화함.

○ 종합의견

-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규정을 보완한 것으로,
- 공공의 역할과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에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.

□ 이상으로,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